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1-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폐기물관리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취지에 맞게 종량제봉투 규격 정비 및 폐기물 배출 시 무게 상한을 정하고,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분리·보관 의무를 부과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종량제봉투로 생활폐기물 배출 시 무게 상한 신설(안 제7조제6항)
 - 1) 75리터 19킬로그램 이하
 - 2) 50리터 13킬로그램 이하
- 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분리·보관 의무 부과(안 제7조의2)
- 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적용에 따른 예외 신설(안 제12조의2)
- 라. 종량제봉투 규격 정비(안 별표 3)
 - 1) 삭제: 100리터(폴리프로필렌 마대 포함)
 - 2) 신설: 75리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5·제15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1. 5. 3.~5. 24.
 - 나) 예고결과: 의견 1건(일부 반영),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붙임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검토의견	처리결과(통보내용)
<p>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 희봉위생공사 지회(지회장 이영진)</p>	<p>별표 1 대형폐기물, 건설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배출 및 수 수료 징수 기준에 -안마의자, 어린이 카 시트 추가 -응접세트 삭제 -간판 규격 세분화를 요구함</p>	<p>-반영: 안마의자, 어린 이 카시트 신설, 간판 규격 세분화함. -반영하지 않음: 응 접세트의 경우, 도내 9개 시군이 운영 중 으로 계속 존치</p>	<p>일부 반영</p>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의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4조의3제1항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각각 한다.

제5조제1항 중 “폐기물처리시설(이하 “폐기물처리장”으로 한다)”를 “폐기물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업장일반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를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로 “kg이상”을 “킬로그램 이상”으로 한다.

제6조 앞의 “제2장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수집·운반·처리”를 삭제한다.

제7조제3항 중 “별표 2이”를 “별표 2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포함한다)을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경우, 규격별로 다음 각 호의 무게 기준 이하로 배출해야 한다.

1. 75리터: 19킬로그램
2. 50리터: 13킬로그램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가연성, 불연성 및 재활용가능 폐기물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종이류, 캔류, 병류, 플라스틱류 등으로 분리·보관해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보관해야 하며, 해당 보관 장소는 악취 및 해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군수는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주민 생활불편 초래 등을 고려하여 주간작업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가로청소 작업, 자동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한 작업 등 작업종류, 여건 등을 고려하여 3명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생활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 앞의 “제4장 종량제봉투의 제작 및 봉투판매소 운영”을 삭제한다.

제15조 조 제목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도와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의 재질)”을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종량제봉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한다.

1. 일반용봉투·재사용봉투: 생활폐기물
2. 공공용봉투: 도로변·골목길 쓰레기, 자연정화쓰레기 등
3.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음식물 쓰레기

제21조 앞의 “제5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삭제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아니한다.”를 “않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같다.”를 “같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한다.”를 “함”으로 한다.

제26조 앞의 “제7장 보칙”을 삭제한다.

별표 1 중 가전제품류란, 생활용품란, 그 밖의 폐기물란의 마지막 칸에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그 밖의 폐기물의 간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종 별		규 격	처 리 비
가전 제품류	전기장판	모든 규격	3,000
	안마의자	모든 규격	8,000
생활용품	어린이 카시트 (유아보호용 장구)	모든 규격	2,000
그 밖의 폐기물	간판	90×270센티미터 이상	10,000
		60×180센티미터 이상 90×270센티미터 미만	7,000
		60×180센티미터 미만	4,000
		입간판	3,000
	그 밖에 미선별 생활폐기물	10킬로그램 기준	2,000

별표 2,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4 비고란 중 “1매당”을 “장당”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보유하고 있는 100리터 종량제봉투(폴리프로필렌 마대 포함)는 제7조제6항 및 별표 3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판매 및 사용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장 총칙</p> <p>제4조의3(청결유지 조치) ①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u>범위 내에서</u>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u>범위 내에서</u>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5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폐기물 등 군수가 설치·운영하는 <u>폐기물처리시설</u> (이하 “폐기물처리장”이라 한다)로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에 적용한다.</p> <p>②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u>의하여</u> 군수가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 제외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외의 군 전역에 적용한다.</p> <p>③ <u>사업장일반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u>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1일 300kg이상이라 하더라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p>	<p><삭 제></p> <p>제4조의3(청결유지 조치) ①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u>범위에서</u>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u>범위에서</u>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폐기물 등 군수가 설치·운영하는 <u>폐기물처리시설로</u>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에 적용한다.</p> <p>②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u>따라</u> 군수가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 제외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외의 군 전역에 적용한다.</p> <p>③ <u>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u>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1일 300킬로그램 이상이라 하더라도 이 조례를 적용 한다.</p>
<p>제2장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수집·운반·처리</p> <p>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에 따른 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중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후 지정된 장소 또</p>	<p><삭 제></p> <p>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에 따른 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중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후 지정된 장소 또</p>

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방법 및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2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 등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일몰 후부터 다음 날 일출 전까지 배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방법 및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 등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일몰 후부터 다음 날 일출 전까지 배출하여야 한다.

⑥ 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포함한다)을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경우, 규격별로 다음 각 호의 무게 기준 이하로 배출해야 한다.

1. 75리터: 19킬로그램

2. 50리터: 13킬로그램

제7조의2(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가연성, 불연성 및 재활용가능 폐기물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하며,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종이류, 캔류, 병류, 플라스틱류 등으로 분리·보관해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보관 장소는 악취 및 해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12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군수는 시행규칙 제16조의

제4장 종량제봉투의 제작 및 봉투판 매소 운영

제15조(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도와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의 재질)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 재사용
봉투, 공공용봉투 및 음식물쓰레기전
용봉투로 구분하고, 일반용봉투와 재
사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 공공용봉투
에는 도로변, 골목길쓰레기 및 자연정
화쓰레기 등을 담아야 하며, 음식물쓰
레기 전용봉투는 음식물쓰레기만 담
아야 한다.

②~③ (생 략)

3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시
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주민 생활불편 초래 등을 고려하여
주간작업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
는 경우

2. 가로청소 작업, 자동상차장치가 부
착된 차량을 이용한 작업 등 작업
종류, 여건 등을 고려하여 3명이 1
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이 비효율적
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생활폐기물을 시급
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생활
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
다고 인정하는 경우

<삭 제>

제15조(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도)

① 종량제봉투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사용한다.

1. 일반용봉투·재사용봉투: 생활폐기물

2. 공공용봉투: 도로변·골목길 쓰레기,
자연정화쓰레기 등

3.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음식물
쓰레기

②~③ (현행과 같음)

제5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제21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 (생략)

제7장 보칙

<삭 제>

제21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음
2. 대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수수료는 별표 1과 같음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함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별표 2]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2조제4호 및 제7조 관련)

종류	세부품목	배출요령
1. 골판지류	가. 골판지상자 등	1)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2)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3) 비해당 품목: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2. 골판지 외 종이류	나. 종이팩(살균팩, 멸균팩: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주스팩 등을 말한다)	1)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 제거 후 말린 후 배출 2)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3)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4)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다. 신문지	1)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2)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라. 책자, 노트, 전단지 등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마. 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바. 그 밖의 종이류	1)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2) 비해당 품목: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3. 유리병	음료수병, 그 밖의 병류	1)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2) 담배꽂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3)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4)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5)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6)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7) 비해당 품목: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관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 (P.P마대에 담아서 배출하거나, 대형폐기물 처리방법으로 배출)
4. 금속캔	가. 음료·주류캔, 식료품캔(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이 해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 제거하여 배출 2) 담배꽂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3)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4) 알루미늄 호일은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
	나. 그 밖의 캔류(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이 해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2)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3) 비해당 품목: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는 P.P마대에 담아 배출
5. 무색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병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6. 합성수지 용기·쟁반형 용기류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쟁반형 용기류(음료용기, 세정용기 등이 해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2) 물로 행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3) 부착상표, 부착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4)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5) 비해당 품목: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과일철, 전화기, 낚시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종량제봉투, P.P마대에 담아서 배출하거나 대형폐기물 처리방법으로 배출
7. 합성수지 비닐류	비닐포장재, 1회용 비닐봉투(각종 비닐류 해당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 제거하여 배출 2) 흘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3)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cm²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ml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4) 비해당 품목: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돛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P.P마대에 담아서 배출하거나 대형폐기물 처리방법으로 배출
8. 발포 합성수지	스티로폼 완충재(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가 해당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2)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3)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4) 비해당 품목: 다른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 P.P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배출
9. 의류 및 원단류	가. 면의류 나. 그 밖의 의류 가. 식물성 섬유(면 마 등) 나.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다.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라. 그 밖의 합성섬유류	군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갖춰 둔 헌옷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전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
10. 전지류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자 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2)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3) 주요 거점에 갖춰 둔 폐건전지 수거함에 배출

11. 형광등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그 밖에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읍면사무소 또는 아파트 내 형광등 분리배출용기에 배출
14. 가전 제품류	대형가전제품(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 에어컨)을 제외한 가전제품	1)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2) 읍면사무소 또는 아파트 내 소형폐가전제품 분리수거함에 배출

[별표 3]

종량제봉투 공급 및 판매 가격(제21조제2항 관련)

1. 종량제봉투 가격의 산정방법

$$\text{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 \times \text{수수료자립도} + \text{제작비} + \text{판매이익}$$

- 가.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은 압롤카, 밀폐식 압축용기등 현대적인 위생장비를 사용할 경우의 수거·운반비용과 침출수처리시설·가스포집시설등이 설치된 위생매립지 및 위생소각장에서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최종처리비용을 합하여 산정함.
- 나. 수수료자립도는 거창군의 기존 자립도·대행체제에서 직영으로 변경될 때의 부담감,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자기부담률의 현실화 방침에 따라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해야 함.
- 다. 제작비는 종량제봉투 용량별 제작단가를 말함.
- 라. 판매이익은 복권판매이익과 같이 9퍼센트를 적용,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수수료자립도×0.09로 산정함.

2. 종량제봉투 공급·판매 가격

(단위: 원)

용량	공급 가격(장당)	판매 가격(장당)
3리터	45	50
5리터	91	100
10리터	182	200
20리터	364	400
50리터	819	900
75리터	1,228	1,350<신 설>
100리터	1,638	1,800<삭 제>
50리터 (pp)	964	1,060
100리터 (pp)	1,929	2,120<삭 제>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 2020. 12. 4.] [법률 제16699호, 2019. 12. 3., 타법개정]

제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이하 이 조에서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안전기준, 적용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에서는 분리·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1. 27.] [환경부령 제891호, 2020. 11. 27., 일부개정]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3.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나.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다. 폭염·강추위, 폭우·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환경부)

2. 생활폐기물 배출에 관한 사항

가. 종량제 적용대상 폐기물의 배출방법(자동집하시설 설치 경우 포함)

- 종량제 적용대상 폐기물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작·판매하는 종량제봉투, 배출 스티커 부착 및 기타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
- 50L 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사업장생활계 폐기물 포함)로 배출 시 압축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종량제봉투 무게 상한을 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통해 제한
 - ※ (예시) 100L: 25kg 이하, 75L: 19kg 이하, 50L: 13kg 이하(폐기물 배출 밀도를 0.25kg/L 이하)

8.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사업장폐기물의 종량제 확대 적용

- 사업장일반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의 경우 1일 300kg이상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종량제를 가능한 한 확대 적용
- 공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일괄적으로 종량제를 확대 적용
- 사업장일반폐기물로서 자치단체에서 처리 가능한 재활용품은 자치단체장의 판단 하에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유·무상으로 반입 처리가능
-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거용 종량제봉투는 일반 가정에서 배출하는 종량제 봉투에 비해 무거워 환경미화원 수거작업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100L 봉투 제작을 금지

□ 2022년(2021년실적) 정부합동평가 대상

평가 지표	폐기물 관리조례 적기 개정 추진실적 (신규)
측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 적기 개정실적 : 폐기물 관리조례 개정 건수 ○ 산식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기물 관리조례 개정건수 - 「<u>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u>」에 따른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내용 포함한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21.12월까지 조례 개정안이 공표된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며, 입법예고 중이거나 지방의회에 제출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② 시군별 폐기물 관련 조례 시행규칙 등에 포함되더라도 실적으로 인정하나, 재활용품 분리배출방법(요령) 등에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③ '21년 이전 기 조례 개정 완료한 경우 실적으로 인정함 ○ 목표치: 조례개정 1건 ○ 평가대상 시·군 ○ 평가기준일: 2021. 12. 31.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시행 2020. 12. 25.] [환경부훈령 제1462호, 2020. 8. 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하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이하 "시·군·구"라 한다)가 지켜야 할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류·보관·수거·운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의 분리·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대형폐기물, 1회용 비닐봉투, 음식물쓰레기 등 별도의 수거·처리 등에 관한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분리수거를 하여야 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별표 1의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각 시·군·구별 여건을 고려하여 분리수거를 시행하되,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분리배출표시 대상인 포장재는 분리수거 대상품목으로 지정하는 등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수거하여야 한다.

[별표 1]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1. 재활용가능자원 품목별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가. 골판지류	· 골판지상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나. 골판지 외 종이류	·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주스팩 등
	· 신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이지 않도록 함
	· 책자, 노트, 전단지 등	-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 기타 종이류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다. 유리병	· 음료수병, 기타 병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꽂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라. 금속캔	· 음료·주류캔, 식료품캔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꽂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 알루미늄 호일은 종량제봉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 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는 특수규격마대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마.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바.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 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과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사. 합성수지 비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흔들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cm²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ml 또는 30g 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돛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아. 발포 합성수지	·스티로폼 완충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촉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자. 의류 및 원단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의류 ·기타 의류 ·식물성 섬유(면, 마 등)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기타 합성섬유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전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
차. 전지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 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전지류 수거일·장소에 배출
카. 형광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별 형광등 분리배출용기에 배출

□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생략)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생략)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